

관리번호

69

삼포석산 운영 중단 및 도락산 인근 관광 개발

1. 분야	관광, 체육	2. 예산/비예산	비예산
3. 완료시기	-	4. 추진부서(협조부서)	허가과
5. 계속/신규	계속	6. 공약수정 필요 여부	필요
7. 법규 제.개정 필요성	불필요	8. 사전절차 이행	-

공약목표

◆ (공약이행방안)

공약이행 확인지표

확인 지표명	목 표	실 적	달성률(%)	목표달성 가능여부
전체 달성률(%)				

□ 사업개요

○ 채석단지 지정현황

소재지	허가자	허가면적(m ²)	허가기간	허가권자	허가목적
은현면 도하리 산37 외 18필지	(주)삼포산업 양주사업소	640,733	2012. 9. 10.~ 2032. 6. 7.	산림청장	토석채취

○ 관련법률

- 「산지관리법」 제29조제1항 (채석단지의 지정·해제)
- 「산지관리법」 제30조제1항 (채석단지에서의 채석 신고)

※ 채석단지 지정·해제권자 : 산림청장

□ 추진실적

- 1978. 09. 08. : 최초 채석 허가(봉재석산)
- 2012. 07. 18. : 채석단지 지정(산림청, 397,818㎡)
- 2019. 05. 10. : 채석단지 변경 지정(산림청, 476,265㎡)
- 2022. 06. 07. : 채석단지 변경 지정(산림청, 640,733㎡)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○ (문제점)

- 우리시 은현면 도하리 산37번지 외 18필지 640,733㎡ 삼표산업에 대하여 「산지관리법」 제29조에 의거 산림청으로부터 2032. 6. 7.까지 토석채취를 위한 채석단지로 지정된 사항으로
- 채석단지 운영 중단을 위해서는 「산지관리법」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채석단지 지정 해제되어야 하며, 채석단지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에 있음.

○ (대 책)

- 채석단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에 있기에 우리시에서 채석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「산지관리법」 제29조 제4항에 해당하는 해제 사유 발생 시 산림청에 지정 해제 건의하고자 함.

「산지관리법」 제29조(채석단지의 지정·해제) ④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24.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·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주변산림과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공약사업 정책실명제	추진부서	허가과	과	장	이은숙	☎ 8082-6400
			팀	장	정영숙	☎ 8082-6450